

경상남도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

- 10개 시·도 12개소 센터 확보 완료, 연내 추가 지정 예정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27일(금) 창원한마음병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.

* (근거법령) 응급의료법 제30조의5(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)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살시도자 등 특히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24시간 상시 대응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.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*를 운영하고 있는 시·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·인력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에 지정하며, 응급실 내에 마련된 전용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내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다.

*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, 소방, 정신건강복지센터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 중

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도입된 '22년부터 '24년까지 9개 시·도에 11개*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였다. '25년 상반기에도 1차 추가 지정 공모를 추진하였으며, 신청 기관의 인력운영 계획 및 정신응급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(경남)에 1개소**를 지정하였다.

* ('22) 8개소 → ('23) 10개소 → ('24) 11개소 → ('25.6월) 12개소

** 창원한마음병원(경남 창원시, 지역응급의료센터)

또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미보유 지역 또는 이미 보유한 지역이더라도 정신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에 연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.

한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**이용환자**는 '22년 749명에서 '24년 3,214명으로 증가하여 도입 이후 **7천여 명이 이용**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'22년 749명 → '23년 3,064명 → '24년 3,214명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 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 ‘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’(일 1회, 최대 3회)를 받을 수 있다. 또한 신체적·정신과적 증상의 초기 사정이 이루어진 경우 ‘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’ 산정이 가능하고, ‘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*·원격협의진찰료**’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도 적용된다.

* 중증응급(의심)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(전문분야)별 각각 산정

** 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

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“자살시도자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”라며, “연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신응급 대응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일열 (044-202-3860)
		담당자	사무관	황지숙 (044-202-3866)



□ 주요 내용

- (사업 목적)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·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
- (사업 내용) 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(2병상) 리모델링과 의사간호사 인건비 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- ▶ (지원예산) '25년 4,207백만원(개소당 연간 642백만원, 국비 50%+지방비 50%)
- ▶ (선정기준)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춘 기관
 - 정신응급단기관찰구역(관찰병상 2병상 이상) 확보, 응급의학과·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간호사, 보안인력 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필요(최소 2명 이상)

□ 지정 현황

- '25.6월 12개소('22년 8개소, '23년 10개소, '24년 11개소)
 - * (서울) 서울의료원, (인천)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, (대전) 충남대병원, (울산) 울산대병원, (경기) 용인세브란스병원,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, (강원) 강원대병원, (전북) 원광대병원, (경북) 안동병원, 동국대경주병원, (경남) 창원한마음병원, (제주) 제주대병원

□ 관련 수가

- (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(최대 3회, 72시간) 산정
- (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) 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초기 사정*이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
 - * 「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」를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
- (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, 원격협의진찰료)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
 - * (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) 중증응급(의심)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
 - ** (원격협의진찰료)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